

FAQ

1.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?

- ☞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 등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.

2. 교육봉사활동을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나, 공공기관 또는 협력학교의 직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될 때,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?

- ☞ 가능함.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하지만,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 가능함. 단, '20, '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한시적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.

3. 휴학, 방학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경우,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?

- ☞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휴학이나 방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음. 단, 교육봉사활동1 수강 이전에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입학 후 첫학기에 교육봉사활동1(0학점)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함.

4. 중등학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데, 유치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?

- ☞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, 교육봉사활동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나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.

5.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는 학생이지만, 연령층이 다양한데, 이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한가요?

- ☞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. 단, 방송통신 중·고등학교, 시·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센터(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)에서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.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은 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 광역문해기관, 프로그램운영기관, 학력인정 기관 등이 포함됨.